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26
----------	-------

발의연월일 : 2021. 7. 9.

발 의 자 : 변재일 · 인재근 · 이정문
도종환 · 서영석 · 이장섭
임호선 · 정정순 · 양경숙
권칠승 · 강훈식 · 권인숙
장철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에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소각 행위는 주변 지역에 악취나 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폐기물”로, “원자력발전소가”를 “원자력발전소·폐기물소각시설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 ----- ----- ----- ----- ----- ----- ----- -----.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 <u>원자력발전</u>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1. ----- ----- <u>원자력발전·폐기물</u>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 <u>원자력발전</u> 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③ ----- <u>원자력발전·폐기물</u> ----- ----- -----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 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 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 발전소· <u>원자력발전소</u> 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 다.	----- ----- ----- ----- <u>원자력발전소·폐기물</u> <u>소각시설</u> ----- -----.
--	---